
김포시 고향사랑기금

자치행정과



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

사업기간	2024. 1. ~ 2024. 12.	사업위치	경기도 김포시
사업규모	전국 지방자치단체		
사업목적	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		
사업구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신규 <input checkbox"="" type="checkbox/>(연례)반복 <input type="/> 계속비사업	재원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자체(100%)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조
집행계획	<input type="checkbox"/> 1/4분기 <input type="checkbox"/> 2/4분기 <input type="checkbox"/> 3/4분기 <input type="checkbox"/> 4/4분기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중		
법적근거	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		제7조, 제11조제3항
	<p>제7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)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개별적인 전화,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)의 이용 2. 호별 방문 3. 향우회,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·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·독려하는 방법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<p>② 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(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)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</p>		
해당조례	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		제12조제2항(기금의 사용 목적)
	<p>제12조(기금의 사용 목적)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, 인쇄비,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</p>		

□ 세출예산 요구

(단위: 천원)

구분	2023년 최종예산액 (A)	2024년 예산액			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최종예산액 (B=C+D)	본예산 (C)	1회추경 요구액 (D)		
계	0	6,000	0	2,250	8,250	
국비					0	
도비					0	
시비		6,000		2,250	8,250	
기타					0	자부담

□ 세출요구액 산출내역

(단위: 천원)

세부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1회추경 요구액	비고
		합 계	2,250	
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	201-01 사무관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카카오톡 비즈보드 홍보 : 5,000,000원(1개월/900만회 노출 기준) = 5,000 · 이벤트 추진 등에 따른 홍보용 답례품 구입 : 경정(3,250,000원)-기정(1,700,000원) = 1,550 · 광역버스 외면 홍보: 경정(0원)-기정(3,200,000원) = -3,200 · 명절용 홍보 봉투 제작: 경정(0원)-기정(1,100,000원) = -1,100 		

□ 예산요구 사유

○ 고향사랑기부제 시행(2023. 1. 1.)에 따라 기부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 예산을 편성하고자 함

□ 예산증감 사유

○ 2023년 모금액 55,000천원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8,250천원을 홍보 예산으로 편성
※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만 기금 내 운영비·홍보비 등의 예산 편성 가능

□ 사전절차 이행 여부

구분	중기지방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사전심사	지방보조금심의	행사성사업사전심의	정수물품배정승인	공유재산관리계획	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	민간위탁의회의동의	출자·출연의회의결
대상여부	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결과	반영	-	-	-	-	-	-	-	-	-
일자	2023.11.	-	-	-	-	-	-	-	-	-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 12. 28. : 「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정
- 2023. 1. 1. : 고향사랑기부제 시행
- 2023. 1. : 김포시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
- 2023. 3. : 김포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
- 2023. 5. : 김포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
- 2023. 10. :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심의·의결
- 2024. 2. : 2023년 결산보고서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 심의·의결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(2024. 2. 13. 기준)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2022	
2023	· 고향사랑기부제 시행(2023. 1. 1.)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접수 · 2023년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 전액 예치
2024	· 고향사랑기부제 시행(2023. 1. 1.)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접수

○ 최근3년 결산현황

(단위: 천원)

회계연도	예산현액 (예산액+전년도이월액)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2					
2023					
2024	6,000	-			2. 13. 기준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자치행정과	자치지원팀장 한애경	담당자	행정8급 고병완	전화	2743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